

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3번지 일대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16일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23번지 외 1필지
3. 정비구역의 면적 : .4,496.5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덕기
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6, 2층(도곡동)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7. 사업시행인가일 : 2022. 9. 7. 7-1.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 : 2026. 1. 9.
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수
4,496.5	57.87	399.99	32,012.8	51.2	공동주택 및 판매시설	지하4층 ~ 지상14층

8-1. 건축계획의 관한 주요 변경사항

- (1) 단위세대 내부 평면 구성 및 면적 변경
- (2) 설비 및 구조 등 건축계획 상 경미한 변경 등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(변동없음)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	1	90	72	18	-
분양	아파트	1	90	72	18	-
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 (변동없음)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공공도서관	558.28㎡	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조합	

11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
- 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- ※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

12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114)에 비치 보관